

스포츠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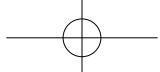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https://sports-in.sports.or.kr>

02-4181-119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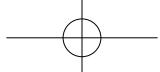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지도자용





가이던스 활용 안내사항

- 본 가이던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체육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2007.02.08. 채택)' 및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헌장(2010.12.06.)'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 스포츠인을 보호하고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제작·배포되었습니다.
- 본 가이던스에 사용된 정의와 예시, 각각의 사례와 관련 법률은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용자 및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CONTENTS

I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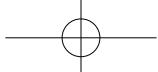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1. 폭력의 정의	06
01 스포츠 폭력이란?	06
02 폭력의 구성 요소	06
03 폭력의 유형	07
04 폭력의 사례	08
2. 예방법	11
01 스포츠 폭력의 원인	11
02 스포츠 폭력 예방 행동지침	11
• 경기장 및 훈련장	
• 학습 및 일상생활	
3. 대처법	14
01 폭력 사건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14
02 학교폭력 사건처리 유의사항	16

II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18
01 스포츠 성폭력이란?	18
02 성폭력의 유형	19
03 성폭력의 사례	20
04 성희롱의 오해와 진실	23
2. 예방법	24
01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	24
02 스포츠 성폭력 예방 행동지침	24
• 경기장 및 훈련장	
• 학습 및 일상생활	
3. 대처법	27
01 성폭력 사건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27
02 2차 피해	30
• 2차 피해의 양상	
•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III 부록

1. 스포츠인권센터 소개	36
2. 유관기관	37
3. 성폭력의 유형별 관련 법률 정보	40
4.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41
5.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44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인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스포츠인권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

스포츠인권 현장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제1조 스포츠는 육체로 하는 자아실현이며 자기 표현의 활동이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육체능력을 배양하며
자신감과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신체 활동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

제2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장 스포츠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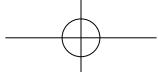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제4장 스포츠 활동 참여는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제5장 스포츠는 다양하다

제6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7장 스포츠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8장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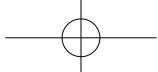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지도자용 가이던스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폭력

I





폭력의 정의



PART 01

폭력이란?

권력(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에 의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

01 스포츠 폭력이란?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어느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 겁을 먹게 하는 것, 강요하는 것,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돌리는 것 등을 말한다.

02 폭력의 구성 요소

장난인데
뭐 어때?
안돼!
폭력이야!

훈련을 마친 A선수는 운동부 복도에서 **A 한 학년 선배인 B선수를 마주쳤다.** 오늘도 B선수는 A선수의 **C 어깨를 일부러 세게 부딪히며 밀어붙이듯** 지나친다. A선수가 아파하며 불편해하자 B선수는 “야, 장난이야 장난~!” 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버린다. A선수는 **B 한 두 번도 아니고,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어깨를 부딪혀오는** B선수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지만, 선배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다.



A 힘의 불균형

관계 안에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음. 주로 강자가 약자를 향해 폭력을 행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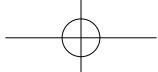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B 반복성

피해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함



C 행위성

의도나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행해지는 모든 폭력



03 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가하거나 선수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밀치기, 발로차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기합, 얼차려 등

ex | 운동 중에 반복적으로 부딪히자 훈련이 끝난 후 학교에서 얼굴과 복부를 때림

방관자 입장의 폭력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집단 구성원들이 폭력 행동을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하기 혹은 폭력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지지하는 것

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하기, 눈 감아주기, 도움 요청 거절하기, 묵인하기 등

ex | 동료 선수에게 과도한 기합(얼차려)을 받고 있는 후배 선수를 보고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침

정신적 폭력

몸에 상처가 나지는 않지만 그에 뜻지않은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감정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

① 언어적 행위

말이나 욕설 등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고함과 욕설, 외모 비하, 협박 등)

ex | 다른 선수와 비교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 훈련장에 다니는 들어올 필요 없다며 소리를 지름

② 관계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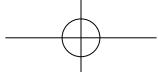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온밀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이나 겁을 주거나 따돌리는 것 (무시하기, 따돌리기, 비웃기 등)

ex | 단체 채팅방에 수십 번 초대하면서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운동실력을 비웃고 욕함

③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

개인의 할 일이나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심부름 시키기, 음주 혹은 흡연 강요하기, 자유시간 통제하기 등)

ex | 선배라는 권력을 사용하여 후배에게 체육관 청소를 물어줌



04 폭력의 사례

스포츠 폭력 사례 1

지도자의 폭행 지시

전국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늘 대규모 평가 경기가 있었다.

저학년 선수들의 기량이 여전히 부진하자 감독은 고학년 선수들 몇몇을 불러 ‘후배들이 아직 대회에 대해 긴장감이 없는 것 같다’고 화를 내고 기합(얼차려)을 주면서 그 책임을 고학년 선수들에게 물기 시작했다. 특히, 긴장감이나 투지가 부족한 것은 운동부 분위기가 너무 편해서라며 ‘선배들이 대회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후배들을 다잡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고학년 선수들은 감독에게 혼이 났다는 사실에 화도 나고, 후배 관리를 하라는 지시도 받았기 때문에 후배들을 모두 집합시키고 단체 기합(얼차려)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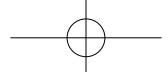
스포츠 폭력 사례 2

사이버 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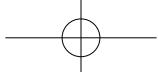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감독은 운동부내 기강 확립을 이유로 선수간 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선수의 고자질로 감독은 A, B선수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독은 A선수와 B선수가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훈련시간을 틈타 A선수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후 두 선수의 대화 내용을 촬영하여 운동부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선수의 사생활을 훈련과 연관 지어 ‘어쩐지 그래서 지각을 했던 거다’, ‘둘이 합숙 중에 늦게까지 같이 있는 것을 본 것 같다’, ‘기량이 오르지 않고 통 집중을 못하는데 이유가 있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감독 개인의 의견을 마구 단체 채팅방에 올리며 다른 선수들도 함께 비난에 동조할 것을 강요했다.

A, B 두 선수는 감독의 행동으로 운동부 내부에서도 비난을 받고 훈련에도 불이익을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분	법률명	내용
학교 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방조, 방관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폭언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p>① 누구든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p>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시행 2019. 7. 16.]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p>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p> <p>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p> <p>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검임교사 등</p> <p>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p> <p>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마.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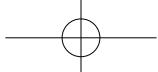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마. 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⁴⁾: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출전정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주4) “마. 폭력”, “아.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자세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대한체육회_관련규정”
(<https://www.sports.or.kr/home/010708/0000/main.do>)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법



PART 02

01 스포츠 폭력의 원인

폭력의 재생산

- 지도자, 선수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대물림 됨
- 무의식적, 의식적 폭력의 악순환

묵인

-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어서', '신고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보복당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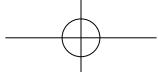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정당화

- 경기력 향상, 정신력 강화, 집단 응집력 강화의 명목으로 폭력이 정당화 됨
- 지도자, 동료, 선후배 사이의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의해 정당화 됨

02 스포츠 폭력 예방 행동지침

경기장 및 훈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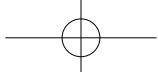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 ① 경기력 향상 또는 팀의 단합을 이유로 기합이나 가혹행위(구타와 욕설)를 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 ② 지도자는 훈련이나 경기 과정에서 사전에 선수에게 훈련 및 경기의 목표와 방법,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③ 선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과도한 훈련은 하지 않는다.
- ④ 지도자는 특정 선수를 편애하지 않으며 훈련 시 모든 선수들에게 골고루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한다.
- ⑤ 경기 및 훈련 중 선수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심한 욕설, 외모 비하, 가족 혐담, 가정형편 언급, 선수의 이전 경기 실수 들추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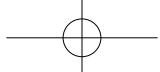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
- ⑥ 경기 결과가 나쁘거나 훈련 성과가 저조하다고 하여 고성과 욕설, 물건 집어 던지기, 파손 등 선수에게 위협과 공포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⑦ 경기 및 훈련 준비와 정리는 선수 각자가 역할을 부여 받아 동등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⑧ 선수 개인의 가방과 훈련 장비는 각자 가지고 이동하고, 단체 훈련 장비 및 물품은 선수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공동으로 들고 이동하게 한다.
 - ⑨ 정해진 훈련시간 외에는 선수의 시간을 강제로 조정하지 않는다.
(귀가 시간 늦추기, 학습권 침해, 보충 훈련 등)
 - ⑩ 훈련과 관계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 ⑪ 훈련장, 운동부실, 운동장비 보관실, 락커룸 등의 장소를 지도자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 한다. (몽동이, 파이프 등 폭력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도 체크)
 - ⑫ 경기 출전 시 엔트리를 선수 및 보호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선수 기용원칙을 분명히 세워 투명하고 공정한 선수출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⑬ 지도자는 선수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항상 주지하고, 선수에 의한 폭력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 ⑭ 폭력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경우라도 묵인, 간과, 회피하지 않는다.
-

합숙 및 일상생활

- ① 지도자의 연락처(전화, 이메일)를 반드시 선수와 그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② 합숙소 주변의 야간 응급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확보하고, 합숙기간 동안의 비상 연락망을 선수와 보호자, 학교(소속단체)관계자가 함께 공유한다.
- ③ 합숙 기간 동안 사용하는 숙소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한 선수 본인 스스로 정비하고, 다인실인 경우 선후배에 관계없이 역할을 동등하게 분담하여 정비하도록 지도한다.



- ④ 합숙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개인의 할 일(세탁, 기호품 구입, 학교 과제 등)은 선수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선수에게 시키거나 사적인 부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⑤ 합숙 시 훈련과 관계없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폭력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적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⑥ 합숙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선수 간의 갈등, 건강 이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한다.
- ⑦ 합숙 기간 중 감독 및 코칭 스태프는 절대 음주를 하지 않는다.
- ⑧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대한체육회 주최 선수(성)폭력 예방교육에 선수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 일정을 확인한다.
- ⑨ 반기별로 1회 이상 대면 또는 설문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폭력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
- ⑩ 폭력이 있거나 있을 것이라는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 ⑪ 소액이라도 선수끼리 절대 금품 거래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통카드,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등을 충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포함)



대처법



PART 03

01 폭력 사건 피해 발생 시 처리 절차

01 사건 발생

- **안전확보** 사건상황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응급대응** 증거확보와 신체적 안전을 위해 외상 진료 및 증거 사진확보 등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상황 파악하기** 지금 벌어진 일이 어떤 이유에 의해 벌어 졌으며, 어떠한 사건을 당하였는지 상황을 파악합니다.

02 사건 신고

- **상황 신고하기** 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수사기관 (경찰)
 스포츠인권센터 02-4181-119 경찰청 112
- ›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수사기관 (경찰)
학교·학부모 / 해당지역 교육지원청
 스포츠인권센터 02-4181-119 경찰청 112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위 관련 기관중 1곳 이상에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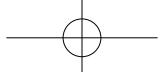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사건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피해 수준을 전달해야 합니다.

-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사건에 대해 동료, 지도자, 부모님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고는 왜
할까요?**

신고 과정을 거쳐야 피해자 보호(병원치료, 가해자와의 분리)와 피해 상황 조사
진행이 시작 됩니다. 신고된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므로 2차 피해 걱정을 덜어 두셔도 됩니다.



03 초기 대응 및 긴급조치

증거 확보하기

사건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을 기록하여 사건을 조사, 진행하는 분들에게 협조 합니다. (시간, 장소, 목격자, 폭력방법 등)

사건으로 인한 외상 흔적, 사고 장소의 CCTV,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 과정에 제공해야 합니다.

치료하기

사건으로 인한 외상이나 심리적인 상처가 선수생활 및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낄 경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특히,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개입 (상담, 휴식 등)을 두려워 하지 마세요)



증거 확보는 왜 중요한가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 상황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해결을 위해 차분히 피해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인이나 상담소,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사건 조사 및 처리

증거 확보하기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 스포츠인권센터와 사건담당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 스포츠인권센터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는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사건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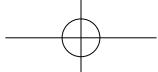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완료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경증에 따라 수사 기관의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는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주체

성인 : 스포츠공정위원회, 사법기관(경찰)

학생 : 스포츠공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법기관(경찰)



05 사후관리

사후관리

온전한 스포츠인으로써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치유와 회복이 중요합니다.
폭력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존감 하락, 불안, 우울, 공포 등)
몸의 회복만큼 마음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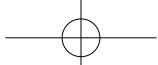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의료기관 및 상담센터(스포츠인권센터 내 상담 서비스 등)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학교폭력 사건처리 유의사항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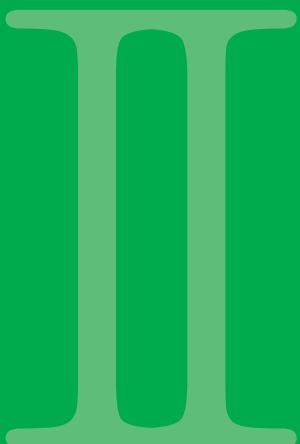
- 01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 02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03 >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 04 >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이나 훈련 시간 이외 시간을 활용한다.
- 05 > 사건과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06 > 성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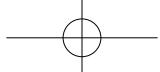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지도자용 가이던스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성폭력





성폭력의 정의



PART 01

01 스포츠 성폭력이란?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이 사회적 분위기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 스포츠에서의 '**관습적인 성차별적 문화**'로 침해 받는, 운동선수의 성적 자기결정권.

미녀 스타?
국민 남동생?
우리는
운동선수입
니다!

여성성, 남성성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스포츠 종목

“미녀 궁사, 미녀 새, 처녀
출전, 국가대표 최고 동안”

남성 선수를 기준으로
비교되는 여성 선수의
운동실력

“여자 펠프스, 여자 볼트,
여자 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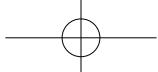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선수 본인의 정체성보다
가부장적 역할 강조

“대표팀 맏딸&살림꾼,
엄마의 투혼, 아내의 승리”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성폭행입니다.

- 동의는 기본적으로 '예'와 '아니오'로 나뉩니다. 동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약점을 잡아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는 동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 | 너 그때 뭔가 숨겼잖아. 그거 문제가 될 수도 있을텐데? 내가 원하는대로 할거지?
- 선배나 지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의를 이끌어 내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ex | 너 이번에 경기에 출전 후보지? 출전하고 싶으면 오늘 우리집에 잠깐 들리지 않을래?
- 협박이나 물리력을 동원해 얻어낸 동의가 아닙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의 “예”는 동의가 아닙니다.



02 성폭력의 유형

신체적 성폭력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성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신체적 성 학대 행위를 하는 것

①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강제로 넣는 것

ex | 특정 선수의 약점을 트집잡아 강제로 성관계를 함

② 성추행

성적인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어나는 간음 외의 성적 가해 행위

ex | 지도자가 파이팅을 하자는 핑계로 신체 접촉(엉덩이 만지기, 껴안기 등)을 함

정신적 성폭력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 혹은 기타 행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① 언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 평가,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말과 행동 등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신저, SNS등)

ex | '자려 입으니 우리 ○○도 여자 맞네! 그 차림으로 대회 나가면 네 몸매로도 예선은 그냥 통과 하겠어!' 와 같은 발언

② 시각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ex | 훈련 중 노골적으로 가슴, 엉덩이,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빤히 쳐다보기

디지털 성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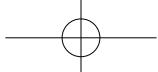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등에서의 성적 괴롭힘

ex | 선배들이 성인비디오, 음란 사진을 공유하거나, 함께 보자고 권유함

2차 피해

피해자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 소문 퍼트리기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ex | 사건의 원인이 모두 피해자가 부주의해서라고 운동부 내 소문을 퍼트림



03 성폭력의 사례

스포츠 성폭력 사례 1

불쾌한 사진 촬영

A선수는 부상에서 회복된 이후 예전보다 준비 운동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근육이 쉽게 풀리지 않아 고민이다. 몸이 경직되다 보니 운동 자세도 잘 나오지 않는다. 결국 지도자가 초반 스트레칭을 도와주고 자세를 수정하기 위해 매일 훈련모습을 촬영하여 분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지도자가 영상 기록 분석을 함께 하지 않고, 혼자만 보거나 영상을 바로 공유해주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훈련 중이 아닌 상황임에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기에 A선수가 뭘 짚으시는 거냐고 물어도, 카메라 테스트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넘어가 버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촬영하는 방법이 불쾌하단 생각에 A선수는 점점 더 찜찜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지도자에게 항의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되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다.

스포츠 성폭력 사례 2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감독은 운동부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선수와 지도자가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초반에는 일정 공유나 공지사항만 올라왔으나 조금씩 훈련에 대한 피드백이나 선수들 간의 가벼운 소통이 오가는 채팅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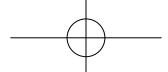
그런데 감독이 채팅방 분위기를 띠운다면 선수들의 외모 등 성적인 글을 자주 올리기 시작했다.

“A선수는 내가 봐도 정말 예쁘게 생겼다.”

“C선수는 아무래도 상품성이 좀 떨어지니 운동으로 성공하는게 제일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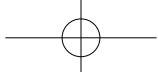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B선수는 지난번 체전 때 경기만 나서면 남자 선수들이 응원하더라, 아무래도 운동 보다 다른 길이 더 확실해 보인다.”

선수들은 감독의 말에 불편감을 느끼지만, 감독에게 대놓고 말대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법률

구분	법률명	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p>❶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3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p>❶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❷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p>❶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❷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사.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유포한 경우 등
아.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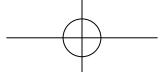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사. 성희롱 등 행위 ⁵⁾		•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아. 성희롱 등 행위 ⁵⁾		•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⁴⁾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주5)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 자세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대한체육회_관련규정”

(<https://www.sports.or.kr/home/010708/0000/main.do>)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4 성희롱의 모해와 진실

Q₁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다?

A₁

피해자

성적모욕감과 수치심
→ 운동을 그만두는 계기

행위자

소속단체의 징계 민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 체육계 퇴출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정신적·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져다 주는 심각한 문제

Q₂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A₂

상황에 따라 무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행동은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성희롱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Q₃ 성적인 농단, 신체 접촉은 운동부의 활력소가 된다?

A₃

피해자는 극도의 불쾌감, 모욕감, 수치심, 분노 등 정신적인 피해로 훈련을 방해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며 운동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운동부안의 신뢰는 깨지고 좋은 선수도 잃게 됩니다.

Q₄ 성희롱은 개인 사이의 일일 뿐이다?

A₄

오랫동안 스포츠계에 뿌리 박혀온 잘못된 인식이 만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경직된 운동부 문화, 위아래를 따지는 상황이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Q₅ 성희롱은 여성의 신체노출로 인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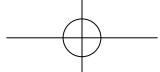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A₅

성희롱 피해자는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Q₆ 단지 친밀감의 표현인데 과민반응 아냐?

A₆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불쾌해 한다면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예방법



01 스포츠 성폭력의 원인

힘의 차이

- 물리적인 힘 혹은 사회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
- 직접적인 성적 가혹 행위 뿐 아니라, 권력의 차이를 이용한 성적인 결정권의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성차별적 문화

-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고정된 성 관념 혹은 성 역할을 기반으로 특정한 언행이 강요되거나 금지됨
-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과 탄압이 존재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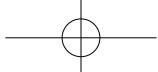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왜곡된 성 인식

- 상대방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대상화 하는 경우가 있음
-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 혹은 상해를 가함

02 스포츠 성폭력 예방 행동지침

경기장 및 훈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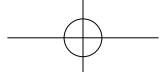
- ① 성폭력은 이성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에도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 ② 훈련 중 성적 굴욕감(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 알몸 또는 속옷만 입고 얼자리를 주기)
- ③ 경기 및 훈련 중 '잘해보자(파이팅) 또는 칭찬'의 의미로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접촉하는 (껴안기, 엉덩이 두드리기, 팔로 감싸기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훈련 중 다른 선수와 마사지 또는 자세 교정의 이유로 신체 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허락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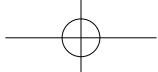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 ⑤ 훈련 시 장난삼아 선수의 신체 특정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를 직접 만지거나 내 몸의 일부를 갖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⑥ 훈련 시 운동 장비로 선수의 신체 특정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를 직접 가리키거나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⑦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선수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이야기를 하거나 외모를 가지고 놀리지 않는다. (예: 가슴이나 엉덩이 크기, 몸매 평가 등)
- ⑧ 선수의 신체 특정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를 계속 바라보거나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⑨ 남녀를 함께 지도할 때 분위기를 풀어준다는 이유로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는다.
- ⑩ 선수간 발생하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과 특징을 선수에게 설명하고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교육한다.

합숙 및 일상생활

- ① 감독 및 코칭 스태프가 선수와 성별이 다른 경우, 합숙 훈련기간 동안 보호자를 상주 시킨다. (선수 보호자, 소속경기단체 관계자, 학교 관계자 등)
- ② 감독 및 코칭 스태프는 이성 선수의 숙소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 간에도 선수의 방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한다.
- ③ 남녀 혼합팀을 지도할 때는 이성 선수의 숙소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④ 기술지도시 신체를 접촉해야 할 경우 특별히 주의하고 반드시 사전에 선수의 동의를 구하고 지도해야 한다.
- ⑤ 합숙소 내외부의 출입문 안전장치, CCTV와 같은 보안장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외부인이 합숙소로 침입하는 것을 차단한다.
- ⑥ 샤워 및 탈의 중 선수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거나 씻겨주는(반대로 만지거나 씻길 것을 강요하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
- ⑦ 선수의 이성 교제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데이트 내용을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 ⑧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사진 및 동영상, 각종 성인사이트 링크 등)을 절대 공유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⑨ 칭찬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 채팅방에 특정 선수의 외모에 대해 평판하거나, 허락 받지 않은 개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절대 유포하지 않는다.
 - ⑩ 감독 및 코칭 스태프는 어떠한 경우라도 선수와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다.
-



대처법



PART 03

01 성폭력 사건 피해 발생 시 처리 절차

01 사건 발생

안전 확보

피해 당사자는 더 큰 위험이나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상황을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02 사건 신고

응급대응

성폭행(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불편하더라도 몸을 씻지 않고, 피해 옷차림 그대로 즉시 병원(산부인과, 비뇨기과-해바라기센터 연계) 방문 (48시간 이내) 필요

증거 확보하기

성폭행 :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내역 기록 및 증거자료 확보
▶ 피해 당시 입었던 옷 종이봉투 보관(세탁X), 피해장소 및 상처 촬영, 피해 사건 기록 (시간, 장소, 목격자, 폭행 방법 등)

성희롱 : 피해사실에 대한 기록 혹은 증거자료 확보
▶ 문자메세지, 녹음내용, 증거물, 목격자 등

추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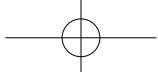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성폭행의 경우 왜 응급대응이 중요한가요?

성폭행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증거를 보존함과 동시에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피해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03 상황 신고하기

상황 신고하기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신고하기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해바라기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 소속단체장 / 수사기관 (경찰)

📞 스포츠인권센터 02-4181-119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경찰청 112

〉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해바라기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소속단체장 / 수사기관 (경찰)

📞 스포츠인권센터 02-4181-119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학교폭력 신고전화 ☎ 117 경찰청 ☎ 112

위 관련 기관 중 1곳 이상에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수준을 전달해야 합니다.

도움 요청하기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신고 과정을 거쳐야 피해자 보호(병원치료, 가해자와의 분리)와 피해상황 조사
진행이 시작됩니다.

신고된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자 모두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므로 2차
피해 걱정을 덜어 두셔도 됩니다.

04 사건 조사 및 처리

치료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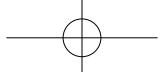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사건으로 인한 외상이나 심리적인 상처가 선수생활 및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치
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낄 경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개입 (상담, 휴식 등)을 두려워 하지 마세요)

조사의 진행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 스포츠인권센터와 사건담당 수사기관 및 해바라기센터
에서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 스포츠인권센터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는 모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사건의 처리**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완료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 기관의 추가적인 법적 재제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주체

성인 : 스포츠공정위원회, 사법기관(경찰)

학생 : 스포츠공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법기관(경찰)

05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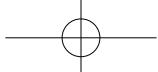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 **사후관리** 온전한 스포츠인으로써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치유와 회복이 중요합니다.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존감 하락, 불안, 우울, 공포 등).

몸의 회복만큼 마음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의료 기관 및 상담센터(스포츠인권센터 내 상담 서비스 등)를 통해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2차 피해

2차 피해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속한 사회의 가족, 친구, 동료, 지도자, 수사기관, 교육청, 의료기관, 언론 등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사고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것, 피해자에 대한 배척, 가해자에 대한 옹호, 소속단체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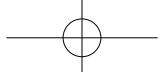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2차 피해의 양상

지도자, 관리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사건의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 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행위자를 옹호하는 의견이나 행위
-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 고충상담원 등 사건 처리를 조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을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혐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
-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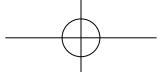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동료 등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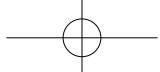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사건을 설부르게 판단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혐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2차 피해의 예방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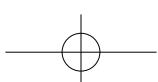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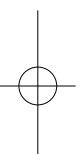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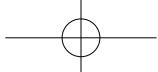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 ①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 ② 혹시라도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을 퍼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 ③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부추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④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습니다.
- ⑤ 사건을 당사자의 평소 행실, 학업(운동)능력, 성격 등과 관련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 ⑥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질문해야 할 때 반드시 동의를 구한 다음 이야기 해야 합니다.
- ⑦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걱정이 되더라도 자세히 물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⑧ 다른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가 일어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여론을 활기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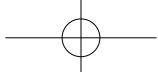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구분	법률명	내용
신고의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p>❶ 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❷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p> <p>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p> <p>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p> <p>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p> <p>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p> <p>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과태료)	<p>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신고의무)	<p>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구분	법률명	내용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	<p>❶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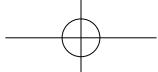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지도자용 가이던스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부록





스포츠인권센터 소개



PART 01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인권센터는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상담, 신고,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관련정보 제공 등의 원스톱서비스를 전문가를 통해 제공합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방이동 44-3) 현대토픽스빌딩 1902호 스포츠인권센터

연락처 : 02-4181-119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선수인권상담실 : 043-531-0288

지원 대상 : 선수, 학부모, 지도자, 관계자

주요사업

찾아가는 스포츠인권 교육

- 체육계 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 폭력·성폭력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 대한체육회 관계 규정 안내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이용안내

심!명!나! 정서지원 프로그램

- 각종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육인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자아 형성 지원

상담 및 사고 신고 접수



온라인 신고하기

<https://sports-in.sports.or.kr>
e-mail : sports19@sport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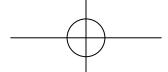
전화 상담하기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02-4181-119 진천선수촌 선수인권상담실 043-531-0288
전화상담 운영시간 : 오전 : 09:00~12:00 / 오후 :13:00~18:00
(평일에만 운영되며, 토요일, 공휴일에는 홈페이지 신고상담을 이용해주세요.)



방문 상담하기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오후 5시 (점심시간 12:00~13:00)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센터)로 직접 찾아오시면 스포츠인권전문상담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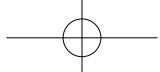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유관기관



PART 02

단체명	연락처	비고
학교폭력 전화문자 상담센터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117	#0117 문자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또는 110)	#1388 문자상담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플러스 친구검색 #1388)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	카카오톡 상담(카카오플러스 친구검색 청예단)
Wee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	02-2057-8701	https://www.wee.go.kr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희망재단	02-3291-3634	서울가정법원 연계사업(보호소년 수강명령 교육) 서울중앙지방법찰청 연계사업 (소년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상담·교육 운영)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http://www.sisters.or.kr
여성긴급전화	1366	광역자치단체(시·도)센터 직접 연결은 '지역번호+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	https://www.women1366.kr	24시간 1:1 채팅상담, 댓글/이메일/게시판 상담카카오톡 상담(카카오플러스 친구검색 women1366)
한국여성의전화	http://www.hotline.or.kr	서울 02-2263-6464, 6465 광주 062-363-0442, 0443 부산 051-817-6464, 4344 대구 053-471-6482, 6483 창원 055-283-8322 천안 041-561-0303 청주 043-252-0966, 0968 성남 031-751-1120, 6677 수원 031-224-688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02-735-7544	신고 전 상담(익명) 전화, 평일 10:00~17:0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삭제지원(피해 영상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 수사 지원 연계(채증자료 작성, 신고 및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http://www.kcva.or.kr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돌봄 비용, 취업지원비 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s://www.klac.or.kr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자녀안심하고 학교내기운동 국민재단	02-3453-5226	http://www.1318love.net



1899-3075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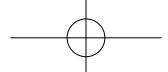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통합형** (위기상황 상담 및 일반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서비스, 심리평가 및 치료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 365일, 24시간)

센터명	주소	운영기관	연락처
서울	서울 종로구 동숭동 1-49 동숭빌딩 2층	서울대병원	02-3672-0365
서울북부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삼육서울병원	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서울중부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02-2266-8276
부산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내 융합의학연구동 6층	부산대병원	051-244-1375
대전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본관 2층	충남대병원	042-280-8436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울산병원	052-265-1375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2층	아주대병원	031-215-1117
경기북서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501호	명지병원	031-816-1375
강원서부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강원대병원	033-252-1375
강원동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 강릉동인병원 별관	강릉동인병원	033-652-9843
전남서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목포중앙병원 별관5층	목포중앙병원	061-285-1375
경북동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장동길 17 포항성모병원 루가관 지하3층	포항성모병원	054-278-1375
제주	제주 제주시 남녕로 5-3 별관 3층	한라병원	064-748-5117

● **아동형** (일반상담, 의료, 법률, 심리평가 및 치료, 출장 수사지원 서비스 | 성폭력 피해 19세미만 아동·청소년 및 모든 연령 지적장애인 | 월~금, 9시~1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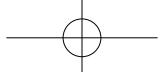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센터명	주소	운영기관	연락처
서울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연세의료원	02-3274-1375
대구	대구 중구 동덕로 125 금화빌딩 5층	경북대병원	053-421-1375



센터명	주소	운영기관	연락처
인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	가천대 길병원	032-423-1375
광주	광주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전남대병원	062-232-1375
경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분당차병원	031-708-1375
충북	충북 충주시 봉현로 222 보성빌딩 4층	건국대 충주병원	043-857-1375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전북대병원	063-246-1375
경남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경상대병원	055-754-1375

○ **위기지원형** (위기상황 상담 및 일반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서비스, 심리평가 및 치료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 365일, 24시간)

센터명	주소	운영기관	연락처
서울동부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1층	경찰병원	02-3400-1700
서울남부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보라매병원	02-870-1700
부산동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1층	부산의료원	051-501-9117
대구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대구의료원	053-556-8117
인천동부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032-582-1170
인천북부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280-5678
광주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2층	조선대병원	062-225-3117
경기북동부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관 3층	의정부의료원	031-874-3117
경기서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2 한도병원 별관 3층	한도병원	031-364-8117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	043-272-7117
충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1층	단국대병원	041-567-7117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지하 1층	전북대병원	063-278-0117
전남동부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순천성가톨로병원 별관	성가톨로병원	061-727-0117
경북북부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지하 1층	안동의료원	054-843-1117
경북서부	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 김천제일병원 7층	김천제일병원	054-439-9600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마산의료원 별관 2층	마산의료원	055-245-8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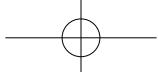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성폭력 유형별 관련 법률 정보



PART 03

유형	내용	법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시키는 행위	형법 제297조 등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형법 제297조의2 등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접촉, 강제 키스,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키게 하는 행위,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형법 298조 등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추행을 한 행위	형법 299조 등
디지털 성폭력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음란물 배포, 판매, 전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기타	성적 목적을 위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침입, 스토킹 등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PART 04

제정 2017. 6. 8.

개정 2019. 7.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한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그에 따른 조사 및 결과처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및 그 단체의 임·직원,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각급 운동부 등 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 클린스포츠센터(이하 “클린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담당관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클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클린센터는 조사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클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 경기, 회계, 입학, (성)폭력 등과 관련한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제1호에 따른 조사와 접수되지 않은 스포츠 관련 위법 및 부정·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지에 의한 조사
3. 제1호, 제2호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부정·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업무
5. 기타 클린센터의 운영에 관한 안내 등

제5조(신고의 방법 등)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클린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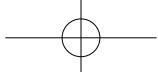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②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취지, 신고 내용 등을 기재하여 문서형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 형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연락처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24.)

③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5.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6. 관련 행정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심판결과 등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인 경우
7. 신고자 스스로 신고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신고자 상담) ① 신고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클린센터 내 상담실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할 때는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이첩) 클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육회 해당 부서, 체육회 관계 단체 등에 이첩할 수 있으며

이첩 받은 부서나 단체는 그 처리 결과를 정한 기일 내에 클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도, 절차 등 체육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2. 체육행정 시책이나 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한 견의
3.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
4. 기타 체육회 클린센터장이 이송을 결정한 사안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 내용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의 성명·사진·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신고 관련 증거 및 정보
3. 그 밖에 신고자임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상황

③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경우 신분을 공개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관련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클린스포츠센터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피신고인의 직위 해제(직원) 또는 직무정지(임원) 등 우선 조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7.24.>

⑥ 클린스포츠센터장은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해당 단체에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7.24.>

제9조(조사 방법) ① 클린센터는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체육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체육회 관계 단체·개인 등에게 내용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요구받은 단체 및 개인 등은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7. 24.>

④ 신고사항의 처리기간은 신고 접수일부터 처분 종결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9.7.24.>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① 클린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체육회 관계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법에 의한 죄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클린센터장은 제1항에 의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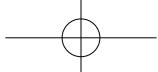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③ 클린센터는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단체는 3개월 이내에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7.24.>

④ 클린센터가 직접 조사한 사안 이외의 체육회 관계 단체 또는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로써 클린스포츠센터장이 해당 단체에 그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7.24.>

제11조(이의 신청 등) ① 제10조 1항 및 3항에 따라 처분 요구를 받은 체육회 관계 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 요청기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인용되지 않아 재심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처분 요청기관에게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클린센터장은 이의 신청 및 재심사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24.〉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사 업무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감사규정 및 스포츠 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24.〉

제13조(행정사항) ① 체육회 관계단체는 클린스포츠 신고·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클린스포츠 업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클린센터는 다른 부서와 중복된 업무에 대한 처리와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의 조사를 위해 체육회 관련 부서 및 관계 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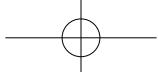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③ 기타 클린센터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2017.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PART 05

제1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43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체육회
2.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3. 체육회의 임원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43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체육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체육회의 임원과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및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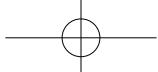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제5장 징계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시·도체육회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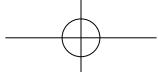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제2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1조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 ②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제4항 및 시·도체육회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시·도체육회 임원 및 시·도 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 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협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 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징계협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 ⑤ 징계협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25조의 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2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 하지 못한다. 단, 해당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장 책임은 1차로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시·도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 제27조(징계종류)**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 ⑤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만료 시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28조(징계요구)

① 체육회는 징계대상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 ② 다제1항에 따라 체육회는 종목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리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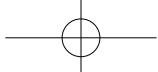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32조(징계의 감경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호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장을 받은 공적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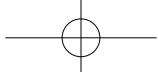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 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 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1.>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체육회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⑤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

- ②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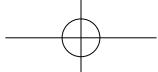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 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별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22조에 따른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선수권의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체육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리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체육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리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육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선수 권리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종목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시·도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 체육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리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리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사·구제키로 한 사안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징계일 현재 지도자·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 '아'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징계의 효력을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협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협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의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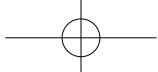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제6장 보칙

제40조(행정처리) ①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 (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 위원회가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해야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규정 제·개정) ①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제39조 (조사 및 구제 등 기능 추가)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부 칙(2017. 5.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종목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

부 칙(2018. 10.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5조의 2(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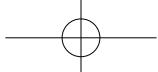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되는 정관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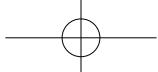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마.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사.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유포한 경우 등
아.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미한 경우: 경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영구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회 출전정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마. 폭력 ³⁾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⁴⁾: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구제명
사. 성추행 등 행위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아. 성희롱 등 행위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⁴⁾: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출전정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자격정지 2년 이하· 자격정지 2년 이하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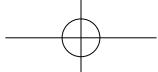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주3)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를 적용한다.

주4) “마. 폭력”, “아.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5)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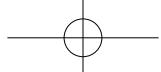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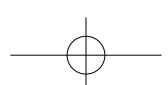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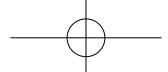
-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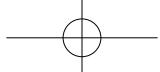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불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 병과)
4. 기타 임원(참가자)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가이던스

발행일 : 2019년 8월

발행인 :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 IOC위원

발행처 :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 스포츠인권센터

감 수 : 대한체육회 체육시스템혁신위원회 스포츠인권보호·교육소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 문화센터

전 화 : 02-420-4202

이 책의 저작권은 대한체육회에 있으며, 불법복제 및 무단사용을 금지합니다.

© 대한체육회, 2019